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421
------	-----

2019. 2. 26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2월 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7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2.26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정책실장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맞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(이사의 수,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)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9조제1항, 제14조제2~7항).
- 공사 사장의 연임뿐만 아니라 해임 기준도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함(안 제8조제1항).
- 손익금 처리에 관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 조항을 따르도록 함(안 제22조).
-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(안 제25조, 현행 제26조 및 제31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사항에 맞춰 사장의 연임기준과 해임기준을 마련하고, 정관으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(이하 “공사”)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임원의 임면 규정(안 제8조)

-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)은 임원의 임면,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, 임원의 수와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(제58조, 제59조).
- 법에 위임을 받은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서는 임원의 임명과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법령에서는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하거나 연임할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(법 제58조제4항 및 시행령 제56조의2)¹⁾,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신설 2006.10. 4>

1.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
조례에서는 법령과 달리 연임기준만 법을 준용토록 하고 해임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.

- 이번 개정안은 사장의 연임과 해임기준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, 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체계상 문제는 없음.
- 다만, 관계 법령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비하지 못해 조례의 해석과 효력을 둘러싼 혼선을 초래한 점은 집행기관의 적절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움.

다. 이사 및 이사회 규정(안 제9조, 제14조)

- 법 제58조제1항에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 이사와 비상임이사)와 감사로 하고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에서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/2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, 비상임이사는 3급 이상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2명과 세무·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(제9조제1항).

- 공사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수를 보다 구체화해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개정안과 공사 정관의 비교>

원안	개정안	공사 정관
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</p>	<p>제10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.</p>

- 최근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이사의 수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²⁾
-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의견을 반영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비상임이사의 수와 자격요건, 상임이사의 정수 범위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2)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 추진(법무담당관-10897호, 2018. 7.30).

- 그러나, 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·감사의 수 이외에 시장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공사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에서 배제될 수 있고, 시장의 임면 권한까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- 또한,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는 이사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(제62조), 현행 조례 제14조 중 이사회 구성, 의장 선임,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, 비상임이사에 대한 경비 지급 등의 규정은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들 조항을 삭제하고 있음.

마. 손익금의 처리(안 제22조)

- 법 제67조에서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
 - ▶이월 결손금 보전 ▶이익준비금 적립 ▶감채적립금 적립 ▶이익 배당 등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감채적립금으로의 적립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규정대로 손익금의 처리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<손익금의 처리 절차 비교>

법	현행 조례	개정 조례안
<p>제67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.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<p><u>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.</p>	<p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 <p>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	<p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<u>법 제6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</u></p>

-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손익금을 처리하도록 하여 추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음.

바. 시장의 관리·감독 등(안 제25조, 제26조, 제31조)

- 안 제2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, 이를 「지방

공기업법」 개정사항(2015.12.15.)에 맞춰 단체장의 감독 권한을 정비한 것임.

- 안 제26조는 시장의 권한이던 “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명령권”을 삭제한 바, 이는 안 제25조에서 시장의 포괄적 관리·감독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중첩되는 규정을 정비한 것임.
- 또한, 안 제31조는 단체장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삭제한 바,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 : 「없음」

가. 수정이유

- 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·감사의 수 이외에 시장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공사 경영 전문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사의 수만 삭제하고, 시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도 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함.

나. 주요내용

- '비상임이사 자격요건'을 수정함(안 제9조제1항).
- 알법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9조제4항).
- 현행 제26조를 유지하도록 함.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2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6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·감사의 수 이외에 시장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공사 경영 전문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사의 수만 삭제하고, 시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도 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비상임이사 자격요건'을 수정함(안 제9조제1항).
- 나. 알법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9조제4항).
- 다. 현행 제26조를 유지하도록 함.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안 제9조제4항 중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정관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</p>
<p>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,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상임이사를 ----- ----- -----.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</p>		<p>④ ----- 정관에 따라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제26조(보고 및 검사)</u> <u>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	<p><u>제26조(보고 및 검사)</u> <u>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, 농수산물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상임 이사를”을 “상임이사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정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

제25조의 제목“(감독)”을“(감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업무를 감독한다”를 “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”로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</p>	<p>제7조(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8조(사장) ① 공사의 사장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이 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사장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<p>제9조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</u>와 <u>비상임이사</u>로 구분하되, 비</p>	<p>제9조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</u>와 <u>비상임이사</u>로 구분하되, 비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,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p>제14조(이사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.</u></p> <p>③ <u>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</u></p>	<p><u>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상임이사를</u> ----- ----- 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정관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</p> <p>제14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u></p> <p><u>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⑦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⑧ (생략)</u></p> <p><u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③ (현행 제8항과 같음)</u></p> <p><u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,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u></p>	